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내규

제정 2008. 1. 11.
개정 2010. 7. 13.

제1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내규는「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 16조 및「국가연구개발사업 공통 보안관리지침」제3조에 의거하여,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있다.

제 2 조 (적용대상) 이 내규는 이 대학교 산학협력단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모든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등에게 적용한다.

제 3 조 (적용범위)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와 관련하여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내규에 의한다.

제2장 보안관리 체계

제 4 조 (연구보안심의회) 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학협력단에 연구보안심의회(이하 "심의회" 라고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산학협력단장, 연구처장, 창업보육센터소장을 포함하여 7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산학협력단장이 된다.

③ 위원은 이 대학교 교직원 중에서 산학협력단장이 임면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개발사업 관련 보안관리 내규의 제·개정
2. 연구개발과제 보안등급 분류에 대한 적정성
3. 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보안사고의 처리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5 조 (연구보안관리 담당자) 산학협력단장은 산학협력단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안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보안담당관을 둔다.

제3장 보안등급 분류

제 6 조 (보안등급 분류기준) ①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보안과제 : 수행성과가 대외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 재산적 가치의 손실이 예상되어 일정 수준의 보안조치가 필요한 과제

2. 일반과제 : 보안과제로 지정되지 아니한 과제

② 제1항에 따른 보안등급을 분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식재산권 확보와 관련하여 기술유출 가능성이 있는 연구개발과제
2.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3. 외국의 기술이전 거부로 국산화가 추진 중이거나, 미래의 기술적·경제적 가치 및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술로서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4. 국방·안보관련 기술로 전용 가능한 연구개발과제

③「국가정보원법」에 따른「보안업무규정」 및「군사기밀보호법」에 따른「군사보안업무시행규칙」에 따라 군사Ⅰ·Ⅱ·Ⅲ급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과제에 대해서는 제1항 내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7 조 (보안등급 분류절차)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과제신청서 제출시 보안과제로 분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과제에 대하여는 보안등급을 분류하여 심의회에 사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의회는 해당 과제에 대한 보안등급 분류의 적정성을 심의하고 심의서(별지 제1호 서식)를 산학협력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8 조 (보안등급 변경) 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산학협력단장에게 변경내역, 변경사유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보안 조치

제 9 조 (보안등급에 따른 조치) 연구책임자는 보안등급에 따른 보안과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외국기업, 국외연구기관에게 연구개발과제를 위탁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단,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산학협력단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외국인의 연구개발과제 참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단,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산학협력단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외국인이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그 해당자의 출입제한지역 및 열람제한 자료목록을 작성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4.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연구원에게 보안유지 의무 및 위반 시 제재사항이 포함된 보안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를 징구하여야 한다.
5. 연구원이 당해 연구와 관련하여 외국인을 접촉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산학협력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별지 제3호 서식).
6. 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정기·수시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연구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별지 제4호 서식).
7. 연구결과물 반출·대외제공·공개 시 산학협력단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10 조 (보안관리대장) 산학협력단장은 연구개발과제의 보안관리 현황을 기록한

대장(별지 제5호 서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5장 보안사고 처리

제 11 조 (보안사고 발생 시 처리) 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과제 관련 정보자료의 유출, 연구개발 정보시스템 해킹 등의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 일시 및 장소, 사고자 인적사항, 사고내용 등을 즉시 산학협력단장에게 보고하고, 조사가 종결될 때까지 관련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 12 조 (보안관리 책임 및 위반에 따른 조치) ①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등은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산학협력단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본 내규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의 참여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13 조 (내규개정) 이 내규는 심의회와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할 수 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내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내규 시행 전에 보안등급을 확정하여 관리하고 있는 계속과제의 경우 지원기관별 보안관리지침에 따른다.

부 칙

① 이 개정내규는 201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등급 심의서

지원기관	과제명	연구책임자명	연구기간	비고

※ 첨부자료 : 보안등급 심의요청 사유서(연구책임자 작성)

보안등급	보안등급 사유	검토의견

200 년 월 일

연구보안심의위원회

위원장	산학협력단장	(인)
위 원	교무연구처장	(인)
위 원	창업보육센터소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별지 제2호 서식]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연구참여가 국가보안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한다.

2. 본인은 연구 정보를 누설함이 법률위반행위가 됨을 명심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후 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은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정보를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연구개발사업의 보안)
   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호관리)

년 월 일

서약자(연구원)	소속	직급	주민등록번호	
		직위	성명	(인)
서약집행자	소속	직급	주민등록번호	
		직위	성명	(인)

[별지 제3호 서식]

참여연구원의 외국인 접촉 현황

* 연 구 책 임 자 :
* 연구개발과제명 :
* 연 구 기 간 :

접촉 연구원			접촉 외국인			접촉일시	접촉사유	비고
소속	직급	성명	소속	직급	성명			

*** 당해 연구와 관련하여 외국인을 접촉한 경우만 작성**

[별지 제4호 서식]

보안점검 및 교육일지

가. 보안점검표

보안등급	연 구 책임자	연구개발과제명	보안상태	점검자	비 고

*** 보안상태는 지침 제9조 각 항목에 대한 이행 실태를 점검하여 기재**

나. 교육일지

교육일시	연구개발과제명	교육내용	참 석 자	교 육 자		비 고
				성 명	서 명	

[별지 제5호 서식]

보안관리대장

일련 번호	등록 일자	보안 등급	연 구 책임자	연구개발과제명	보관상태	관리책임자	비 고